

의안번호	2217355
의 퇴 인	장철민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1.
추 계 번호	26F1340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석유정제업자 등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5조의 3 (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초과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면, 초과소득의 20%를 법인세액에 가산 ※초과소득 =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5조의 3 (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초과소득의 20%를 법인세액에 가산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므로 법인세수의 증가가 예상됨

-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다음 요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임
 -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
 - 석유정제업자¹⁾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²⁾
 - 해당 사업연도에 탄력세율이 적용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납부한 경우
 - 초과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- ※초과소득 =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

1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자

2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

-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초과소득 분포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관련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의 세수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 - 관련 산업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단위로 순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,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초과소득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
 - 예를 들어, 순손실을 포함하여 평균을 산정하는지 또는 순손실을 0으로 간주하여 평균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초과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초과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